

## 미국장로교의 결혼의

먼저,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

동성간의 결혼의 문제는 1983년 남장로교와 북장로교가 하나로 연합하기 전 1970년대부터 수면 위로 등장한 이슈였다. 거의 40년의 논쟁 끝에...

지난 2014년 미국장로교 제 221회 총회(Detroit)에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문구를

“두 사람의,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이라는 문구로 결혼에 관한 표현을 수정하였다.

이 수정안이 담고 있는 중요한 변화는, 결혼을 “두 사람 사이의 서약 (commitment between two people)”으로 정의한 포괄성(包括性)에 있다.

현재 미국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상태이다. 그리고 미국 내 모든 한인 교회는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법적, 사회적 환경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미국장로교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미국 헌법 제 1조와 같이 목사와 당회가 스스로의 신앙 양심에 근거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 것이다.

## 결혼예식에 관한 미국장로교의 핵심정책

결혼예식에 관한 미국장로교의 **핵심정책**은 아래와 같다.

### W-4.9006

“Nothing herein shall compel a teaching elder to perform nor compel a session to authorize the use of church property for a marriage service that the teaching elder or the session believes is contrary to the teaching elder’s or the session’s discernment of the Holy Spirit and their understanding of the Word of God.” (Book of Order)

“목사나 당회가 성령의 분별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혼에 관해 내리는 목회적 결정에 대하여, 그 누구도 목사의 결혼 집례를 강요할 수 없고 또한 당회의 결혼을 위한 교회 건물 사용 결정을 강요할 수 없다.”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미국장로교는

목사와 당회가 전통적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적 자유를 보장하며,  
우리 믿음의 자유는 이 울타리 안에 보호받고 있다.

이런 핵심규정이 가능한 이유는  
미국장로교의 2 개의 기본정신이 있기 때문이다.

## 장로교 믿음의 기본정신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Book of Order)의 첫 부분에 적혀있는  
선교 및 교회정치 원리 속에는

**개혁신앙의 전통** 과 **신앙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의 기본정신**이 기초가 되고 있다.

### (1) 개혁신앙의 전통

#### **F-2.05 The Confessions as statements of the Faith of the Reformed Tradition** 개혁전통의 신앙 진술로서의 고백

“In its confessions, the Presbyterian Church (U.S.A.) expresses the faith of the Reformed tradition. Central to this tradition is the affirmation of the majesty, holiness, and providence of God who in Christ and by the power of the Spirit creates, sustains, rules, and redeems the world in the freedom of sovereign righteousness and love.” (Book of Order)

“미국장로교는 그 신앙고백에서 개혁 전통의 신앙을 표현한다. 이 전통의 중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권적인 공의와 사랑으로 자유로이 이 세상을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거룩하심, 섭리하심에 대한 확증이고 선언이다.” (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 (2) 신앙양심의 자유

### F-3.0101 God Is Lord of the Conscience.

하나님이 양심의 주인이다.

a. That God alone is Lord of the conscience, and hath left it free from the doctrines and commandments of men which are in anything contrary to his Word, or beside it, in matters of faith or worship.

a.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의) 양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은 신앙이나 예배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거나 벗어나는 사람들이 만드는 교리나 계율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b. Therefore we consider the rights of private judgment, in all matters that respect religion, as universal and unalienable....

b.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종교문제에서 개인적인 판단의 권리를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Book of Order/미국장로교 헌법/규례서)

### 개혁신앙의 전통과 신앙양심의 자유는

미국장로교의 분명하고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기둥이다.

**이 가치 아래 한인교회는 믿음의 자유를 보호받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했다.**

[참고: 2015 년 NCKPC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결의문]

